존중과 협력으로 함께 자라는 우리

## 서신 가정통신문

2020. 11. 6. 전주서신초등학교

교무실: 254-5461

## 제목: 취학 관련 예비 학부모 안내

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.

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**조기입학 · 입학연기 · 취학유예 · 면 제 및 예비소집 참석 등**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2021학년도에 취학할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자녀의 취학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

- 1) (취학의무)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·중등교육법 제 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
  - ※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.
- 2) (조기입학, 입학연기) 조기입학 · 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/면/동 사무소(행정복지센터)로 12.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  - \*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, 신중하게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.
- 3) (취학유예, 면제) 입학아동이 질병 ·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전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- ※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,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 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.
- 4) (예비소집 참석)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5) (예비소집 불참시)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.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 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 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6) (거주지 이전 시)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시 전입한 읍·면·동사무 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

2020. 11. 6

전 주 서 신 초 등 학 교 장